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5093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1. D

2. E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정범영, 한지윤

3. F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15,228,731원 및 그 중 12,980,766원에 대하여는 202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3%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5,228,731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28,7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2016. 3. 4.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그 결제대금을 제때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2021. 4. 26. 현재 그 사용대금 원금 14,980,766원(= 일시불 3,600원 + 할부 12,007,862원 + 현금서비스 2,000,000원 + 일시불이월약정 969,304원), 연회비 8,000원, 수수료 17,419원, 연체수수료 86,588원, 연체료 136,228원, 합계 15,228,731원을 입금하지 않고 있다.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2.3%, 현금서비스(= 대출)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1.9%이다.

나. 피고 F과 D은 부부였는데, 2021. 3. 19.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다. 피고 F은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2.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1. 1. 18. 접수 제5816호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D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2021. 3. 30. 접수 제34347호로

202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위 같은 등기소 2020. 6. 30. 접수 제65496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위 같은 등기소 2020. 10. 21. 접수 제107178호로 2020. 9.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39,000,000원, 존속기간 2020. 9. 1.부터 2022. 8. 31.까지, 전세권자 경기도청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2. 17.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가 제2호증(혼인관계증명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신용카드사용대금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원리금 15,228,731원 및 그 중 신용카드 사용대금 12,980,766원(= 일시불 3,600원 + 할부 12,007,862원 + 일시불이월약정분 969,304원)에 대하여는 202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3%의, 대출금(= 현금서비스)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의 각 약정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라도 이를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상태에 이르거나 무자력상태가 심화되면 그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인천 용진군 H 임야 991㎡ 중 991분의 3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에 대하여 “2021. 1. 12. 증여”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1. 14. 접수 제13954호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은, 「피고 F의 채무가 과다하여 2021. 1. 15. 피고 D과 F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D이 증여받되 그 대신 G조합에 대한 앞서 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경기도청에 대한 3,9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피고 D이 승계하며, 취득세 및 이전비용 900만 원은 피고 D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F은 자신의 적극재산을 모두 피고 D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F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 D도 피고 F의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 D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는 상당한 정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제출한 을가 제1호증(이혼합의서)에는 인천 웅진군의 앞서 본 임야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과 F이 진정으로 을가 제1호증 기재와 같은 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더라도 그 당시 피고 F의 적극재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4,000,000원 이상이고(이는 웅진군 임야 가액을 포함시키지도 않은 금액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비율은 각각 50%가 기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비율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D과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1. 12.자 증여계약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갑 제11호증(사실조회신청에 따른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2020. 6. 29.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14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해행위시인 2021. 1. 12.경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해행위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원물반환을 하면 사해행위시에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까지 원상회복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G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받아 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최대 60,000,000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경기도청의 전세금 39,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적어도 44,000,000원(= 143,000,000원 - 60,000,000원 - 39,000,000원)이 되고, 이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F의 2021. 1. 12.자 증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5,228,731원 전액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고, 피고 D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직접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피고 F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800만 원으로 가격을 정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 E과 D이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금은 매도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서 매수인에게 전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특약사항 2항),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더욱 추후의 법률문제 등을 고려하여 금융자료를 남겨 두어야 함에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매수인이 취해야 할 태도에 반하며, 설사 피고 E과 D의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할까 염려하여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피고 E이 그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해서 매수인에게 전달한다”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므로 기재할 필요도 없고, 거래당사자가 매수인인데 “매수인에게 영수증을 전달한다”는 부분도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을가 제7호증에는 계약체결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는 통상의 계약서와도 다르며, 통상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한 사람이 기재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 각자의 이름은 본인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을가 제7호증에 기재된 “D”, “E”의 필체는 극히 유사하고, 주소 기재부분의 필체까지 합하여 보면 동일한 사람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 “E”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은 거의 동일한 곳에서 조각된 인장으로 보일 정도로 글자체가 유사하며, 인영의 크기, 날인된 기울기도 거의 동일하다.

사해행위에 대한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을 제7호증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E이 피고 F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 F의 사해행위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5,228,731원 전액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고, 피고 E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받아들여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별지